

예산군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

의안 번호	25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년11월 일
제출자 : 예산군수

1. 제안이유

- 환경정책기본법 개정(법률 제6097호 1999. 12. 31)되어 2000. 8. 1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하여 21세기 예산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궤적한 환경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하는 예산군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가. 협의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경비, 늘푸른예산21 실천사업비,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3조)
- 나. 보조금의 지원은 경상적경비, 사업비로 지급하며, 교부신청·결정 및 정산은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함 (안 제4조)
- 다. 환경보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, 예산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적용하도록 함. (안 제5조)
- 라. 협의회의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 등을 군 소속 공무원이 확인·검사 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환경정책기본법 제33, 34, 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, 4조
-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, 2, 10, 12, 12의2, 13, 15조

예산군 조례 제 호

예산군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21세기 예산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하는 예산군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늘푸른예산21"이라 함은 군민, 기업가, 전문가,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작성하는 예산군의 지방의제21로서 21 세기에 군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민, 기업가, 전문가,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 등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고, 실천 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.

제3조(경비등의 지원) ①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1. 협의회의 운영경비

2. 늘푸른예산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

3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②군수는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, 회의참석, 자료 제출 등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방법 및 정산) ①협의회에 대한 군의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.

1.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로 신청에 의하여 지급

2.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 개시전에 지급

②보조금의 교부신청, 교부결정, 사업비의 정산 등은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.

제5조(사무의 위탁) ① 군수는 군의 환경관련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경관련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, 사무위탁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.

제6조(감독)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,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,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 등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 또는 협의회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